표지 및 목차

이우학교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2026년 4월 30일

▶ 목차

- 아래의 파란 글씨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1안] 정관 변경의 건

[2안] 규약, 규정의 변경의 건

[3안] 조합원 제명, 탈퇴의 건

[4안]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의 건

[5안] 2025년 감사 보고의 건

[6안] 2026년 임원 선출의 건

[7안]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건

[8안] 기타 안건

[1안] 정관 변경의 건

[1안] 정관 변경의 건

보고 및 안건 제안자 | 이사장 한덕희(대표), 이사 김나리, 신광호, 윤을순, 장기혁, 이사 및 간사 정현진

작성자 | 간사 정현진

▶ 변경 신/구 대조표

구	신	개정 내용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고와 함께 조합원이 조합 가입시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합원이 더욱 편히 공고 게시 사항을 확인 및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추가 -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용어 수정 - 공고 사항을 서면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 확인 도구를 활용하여 안내함으로서 공고 및 게시 사항을 용이하게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참여,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로 조합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자. 2. 준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만 이용하며 조합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 수지 않는 자	-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원, 준조합원으로 정리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1일 전, 최대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실무의 용이함을 위하여 최소 1일 전을 추가
제15조(제명)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명)**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단, 의견진술의 기회를 안내하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진술의 기회를 안내하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의 경우가 있음. - 공고 사항을 서면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 확인 도구를 활용하여 안내함으로서 공고 및 게시 사항을 용이하게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⑤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된 출자금은 조합의 기부금으로 귀속된다. 이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공고 사항을 서면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 확인 도구를 활용하여 안내함으로서 공고 및 게시 사항을 용이하게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 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 공고 사항을 서면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문자,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하여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 확인 도구를 활용하여 안내함으로서 공고 및 게시 사항을 용이하게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③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5조와 통합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5조(삭제) <2026.04.30>**	- 제33조와 통합
제41조(이사회)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단,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다만, 관련 규약 또는 규정 혹은 안건에 따라 운영위원이 이사회에 동석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실무 운영진인 운영위원이 이사회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제45조의1(임원과 운영위원의 정의)** ① 이사는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업무, 사업 등 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② 감사는 조합의 사업 운영, 재정 상태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이를 말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조합의 사업장, 사업 운영을	- 운영위원 단위를 추가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이를 말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2 (임원과 운영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다. 임원은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총 조합원 수의 최대 100분의 5까지 둘 수 있으며, 그 수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최대 10명을 넘을 수 없다. 이사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를 둔다. ④ 운영위원은 총 조합원 수의 최대 100분의 5까지 둘 수 있으며, 그 수가 최대 10명을 넘을 수 없다.	- 신설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 임원의 정수 변경 - 운영위원의 정수 사항에 대해 추가 - 상임임원을 상임이사로 수정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7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7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은 교사,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조합 사업의 주요 담당자 혹은 사업장의 주요 운영자 혹은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갈음한다. 다만, 조건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규약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의 선임 사항에 대해 추가 - 신설 및 유관 조항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 부이사장, 전무이사 등의 직위 사항 삭제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 조합원 자격에 관한 유관 조항 및 법규 사항에 따라 자격 내용을 통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을 이용한 지지 호소	- 공고 사항을 서면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 확인 도구를 활용하여 안내함으로서 공고 및 게시 사항을 용이하게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명칭이 중복되어 사용됨으로 명확한 표기로 변경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 ‘임원’으로 변경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2회 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4년)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임원과 운영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2회까지 연임(최대 6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만 연임(최대 4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신설 조항에 맞추어 조항 명칭 변경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직무가 삭제되었음으로 상임이사, 이사, 감사 순으로 변경.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명칭 수정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②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임원을 이사로 변경
제58조(운영의 공개)	**제58조의1(운영의 공개)**	- 조항 번호의 변경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5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실무상 용이함을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용어 변경 - 공고 사항을 서면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 확인 도구를 활용하여 안내함으로서 공고 및 게시 사항을 용이하게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60조(사업의 종류)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제60조(사업의 종류)**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강조하여 작성

	주 사업 목적 지출(고유목적사업 지출과 동의同義), 법정적립금의 적립, 임의적립금의 적립 등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정관 제66조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 (구) 정관 전문 (첨부파일 참고)

PDF **안건1_별첨_정관(구/개정).pdf**

▶ (신) 정관 전문

이우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2020년 5월 9일 제정
2024년 4월 24일 일부개정
2026년 4월 30일 본조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이우학교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우학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이우학교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우락(樂)쿱)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복리증진, 이우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상호협력, 지역공동체 협력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 287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이우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와 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고와 함께 조합원이 조합 가입시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참여,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로 조합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자.
2. 준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만 이용하며 조합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1일 전, 최대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단, 의견 진술의 기회를 안내하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탈퇴를 하고, 출자금을 기부한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청구권은 소멸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된 출자금은 조합의 기부금으로 귀속된다. 이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을 총회에서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특별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2. 공간 및 시설사용료 – 기기설비, 공간 등의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③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삭제) <2026.04.30>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다만, 관련 규약 또는 규정 혹은 안건에 따라 운영위원이 이사회에 동석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의1(임원과 운영위원의 정의) ① 이사는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업무, 사업 등 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② 감사는 조합의 사업 운영, 재정 상태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이를 말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조합의 사업장,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이를 말한다.

제45조의2 (임원과 운영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다. 임원은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총 조합원 수의 최대 100분의 5까지 둘 수 있으며, 그 수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최대 10명을 넘을 수 없다. 이사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를 둔다.
④ 운영위원은 총 조합원 수의 최대 100분의 5까지 둘 수 있으며, 그 수가 최대 10명을 넘을 수 없다.

제46조(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7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은 교사,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조합 사업의 주요 담당자 혹은 사업장의 주요 운영자 혹은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갈음한다. 다만, 조건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규약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과 운영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2회까지 연임(최대 6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만 연임(최대 4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때에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의1(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조합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이용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학생교육복지사업

2. 민주시민교육사업
3. 학생건강증진 사업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5.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6. 마을교육공동체 주거복지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주 사업 목적 지출(고유목적사업 지출과 동의同義), 법정적립금의 적립, 임의적립금의 적립 등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정관 제66조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61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 칙

제1조(최초 임원의 임기)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안] 규약, 규정의 변경의 건

[2안] 규약, 규정의 변경의 건

보고 및 안건 제안자 | 이사장 한덕희(대표), 이사 김나리, 신광호, 윤을순, 장기혁, 이사 및 간사 정현진

작성자 | 간사 정현진

---

1. 선거관리규약

▶ 변경 신/구 대조표

구	신	개정 내용
제9조 (임원후보자의 자격) ② 이사회는 ①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자격)** ② 임원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에 따른 총회 참석 대상자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이외의 자는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 조합원 자격 유지, 총회 참석 대상자로 명시. (유관 조항에 따른 의결사항임) - 항목 번호 변경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약 개정안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적용례 등을 정하는 부분으로 규약의 부칙 변경 시의 시행일을 매번 추가하는 것이 아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으로 변경

▶ (구) 선거관리규약 전문

선거관리 규약

2020년 5월 2일 제정/2021년 4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3이 전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회의 및 총회 중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①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동안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자격】① 임원후보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중에서 아래의 내용 중 1가지 이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2. 조합의 각종 자치 행사와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② 이사회는 ①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후보자의 추천】①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7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① 임원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⑥ 전형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후보의 자격을 전형하여 임원 후보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 한다.

제12조【임원후보자 등록】① 제10조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공고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자 등록시에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를 제출하고, 임원 입후보자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심사 및 접수】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추천의 금지】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5조【기호】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6조【등록의 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선거 공보의 제작과 공고】선관위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6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단, 조합이 대의원 총회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에게 정관 32조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9조【선거방법】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법으로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방법을 총회에서 정한다.
②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③ 표결 시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미리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거】① 이사장은 이사로 당선된 자들이 그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장 후보가 다수일 때에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은 제19조와 제22조를 따른다.

제21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정관 41조 ②항에 따라 학생활동이사를 2인 이상 8인 이하를 둘 수 있다. (신설)
③ 학생활동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갖되 등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신설)
※ 정관41조 ②항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단,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당선인의 결정】① 선거인의 과반수가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한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제1차 선거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3조【당선인의 선포】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당선된 임원은 임원취임승낙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임기개시일】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2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약 개정안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 선거관리규약 전문

이우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규약

2020년 5월 2일 제정
2021년 4월 23일 일부개정
2026년 4월 20일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3일 전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회의 및 총회 중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동안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자격) ① 임원후보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 중에서 아래의 내용 중 1가지 이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2. 조합의 각종 자치 행사와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② 임원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에 따른 총회 참석 대상자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이외의 자는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조합원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이 완료된 조합원이며 추천일 당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임원후보자를 추천한 조합원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 규약 제6조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탈퇴를 하여 재적 조합원이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본 조항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전형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7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① 임원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⑥ 전형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후보의 자격을 전형하여 임원 후보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 한다.

제12조(임원후보자 등록) ① 제10조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공고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자 등록시에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를 제출하고, 임원 입후보자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5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6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선거 공보의 제작과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6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9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법으로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방법을 총회에서 정한다.
②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③ 표결 시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미리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은 이사로 당선된 자들이 그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장 후보가 다수일 때에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은 제19조와 제22조를 따른다.

제21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제22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가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한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제1차 선거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3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당선된 임원은 임원취임승낙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

▶ 변경 신/구 대조표

구	신	개정내용
이우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	**이우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	- 규약 명칭 변경 (중복되는 명칭을 삭제)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9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관 법규, 조항에 맞춰 조항 번호 재배치 - 규약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제2조(적용범위) 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규약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제3조(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구: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경우 총회에 관한 사항을	**제3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총회는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이 완료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경우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규약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 가입/탈퇴 조합원 중 총회 구성원의 기준을 회계연도 종료가 아닌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로 변경. - 유관 법규 및 조항으로 설명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② 이우락쿱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며, 각 위원회(2021년 5월 현재 사업개발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총괄지원위원회)의 위원장, 각 위원회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며, 정관 제45조의1, 제45조의2, 제46조, 제50조를 따른다.	
제4조(대의원 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제4조(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경우 정관,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정기총회'는 '대의원총회' 본다.	- 대의원총회의 경우 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추가함.
제6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구: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재적 조합원 확정)** ① 총회는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이 완료된 조합원을 재적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재적 조합원에서 제외된다.	- 가입/탈퇴 조합원 중 총회 구성원의 기준을 회계연도 종료가 아닌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로 변경.
제9조(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 개최)	**제9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규약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제18조(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사항) 신설 1. 각 위원회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 2. 각 위원회별 예산 및 결산 논의 3. 각 위원회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논의 4. 총회 혹은 이사회로 위임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결정 5. 기타 이우락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1. 사업 혹은 사업장 운영 단위별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사업 혹은 사업장 운영 단위별 예산 및 결산 3. 사업 혹은 사업장 운영 단위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논의 4.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약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 유관 법규, 조항을 설명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된 규약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적용례 등을 정하는 부분으로 규약의 부칙 변경 시의 시행일을 매번 추가하는 것이 아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으로 변경

▶ (구)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 전문

이우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

2020년 5월 9일 제정/2021년 5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구: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 총회의 경우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② 이우락쿱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며, 각 위원회(2021년 5월 현재 사업개발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총괄지원위원회)의 위원장, 각 위원회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대의원 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총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각 조합원에게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우락쿱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 혹은 위원들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구: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7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석】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9조【총회 및 이우락쿱 운영위원회 개회】
①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② 위원장은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과반 위원 이상이 참석했을 때 개회를 선언한다.

제10조【총회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안 설명】
의안은 의장(이사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3조【총회의 휴회 또는 연장】
①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총회의 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제15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6조【총회 의견 청취】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사항】 신설
1. 각 위원회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
2. 각 위원회별 예산 및 결산 논의
3. 각 위원회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논의
4. 총회 혹은 이사회로 위임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결정
5. 기타 이우락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의 공개】
①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된 규약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 전문

이우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

2020년 5월 9일 제정
2021년 5월 21일 일부개정
2026년 4월 30일 본조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9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총회는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이 완료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경우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며, 정관 제45조의1, 제45조의2, 제46조, 제50조를 따른다.

제4조(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경우 정관,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정기총회'는 '대의원총회' 본다.

제5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총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각 조합원에게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우락쿱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 혹은 위원들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재적 조합원 확정) ① 총회는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이 완료된 조합원을 재적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재적 조합원에서 제외된다.

제7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석)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9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회) ①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② 위원장은 이우락쿱 운영위원회의 과반 위원 이상이 참석했을 때 개회를 선언한다.

제10조(총회 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안 설명) 의안은 의장(이사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3조(총회의 휴회 또는 연장) ①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총회의 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제15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6조(총회 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사록) ① 정관 제37조를 준용하여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있다.
② 총회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운영위원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1. 사업 혹은 사업장 운영 단위별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사업 혹은 사업장 운영 단위별 예산 및 결산
3. 사업 혹은 사업장 운영 단위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논의
4.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의 공개) ①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안] 조합원 제명, 탈퇴의 건

[3안] 조합원 제명, 탈퇴의 건

보고 및 안건 제안자 | 이사장 한덕희(대표), 이사 김나리, 신광호, 윤을순, 장기혁, 이사 및 간사 정현진

작성자 | 간사 정현진

---

1. 안건 제안 배경

학생 졸업 이후 학생 조합원 또는 학부모 조합원의 활동이 이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합원 자격 규정에 의거 조합원 제명을 제안

2. 관련 법령 또는 법규

- 정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동 조항의 제2항에 따라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3. 제명 대상자 명단

이름	단위	생년	사유
손정림	학부모	1972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김소연	학생(졸업생)	2003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김용재	학생(졸업생)	2003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김정민	학생(졸업생)	2002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송유준	학생(졸업생)	2007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안지성	학생(졸업생)	2003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엄태현	학생(졸업생)	2003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윤정안	학생(졸업생)	2006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이동욱	학생(졸업생)	2005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최이랑	학생(졸업생)	2004	3년이상 협동조합 이용이 없고, 의사확인 연락에도 회신이 없음

[4안]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의 건

[4안]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의 건

사업 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보고 및 안건 제안자 | 이사장 한덕희

작성자 | 간사 정현진

▶ 당기 사업별 주요 보고

1. 학생교육복지사업

가. 정의

모든 학생이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사업 계획 대비 실천 내용

순	프로그램명	결과
1	틈 장학인턴십 (함께여는교육연구소 협력)	완료
2	학생 프로젝트 지원 (축바람 상영회 등 지원)	완료
3	청소년 인턴십	완료
4	우주소년 내 청소년 인턴십	완료
5	청소년 문화제	완료
6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별도 진행 사항 없음
7	학교 도서관 납품 확대	완료
추가	청년 일경험 사업 (사다리 및 삼성희망디딤돌 협력)	완료
추가	청소년 활동 결과공유회	완료

다. 프로그램별 주요 결과 보고

1) 틈 장학인턴십

- 함께여는교육연구소의 '틈' 장학인턴십의 지원을 받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8개월 진행함.
- 이우고 2학년 이시은 학생과 매칭이 되어 프로그램 운영함. 우주소년 카페, 사업장 관리, 달콤권 제작, 이우락쿱 교육,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일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짐.
- 매월 학생 장학금 20만원, 기관 멘토 지원금 10만원을 받았음.

2) 학생 프로젝트 지원

- 이우고등학교 동아리 '축바람'에서 마을기관 스폰서 요청이 들어와 현수막 제작, 음료 쿠폰 지원 등을 진행함.
- 2026년 2월에는 축바람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축바람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실시함.

3) 청소년 인턴십

- 제천간디학교의 사회체험프로그램 참여 요청이 들어와 고등학교 3학년 김지훈 학생과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 우주소년 카페 업무 배우기, 매장 관리하기, 해도두리 장터 준비해서 나가기 등을 통해 일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짐.

4) 우주소년 내 청소년 인턴십

- 여름방학 3주간 주 15시간씩 우주소년 책방지기가 되어 관리하고 매니저를 지원하는 인턴십 경험을 실시함.
- 이우고등학교 2학년 이권주, 이우고등학교 3학년 김서영 학생과 틈 장학인턴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우고등학교 2학년 이시은 학생까지 총 3명 참여함.
- 인스타 릴스 만들기, 자기소개 카드 뉴스 만들기, 카페 업무 배우기, 공간 관리 하기 등, 일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짐.

5) 청소년 문화제

- 청소년 영화감독 영화상영회, 청소년 문화제, 청소년 문학공모전까지 총 3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됨.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역서점문화활동 지원사업(전체 사업 운영비 지원), 이우교육공동체(공모전 시상금 지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

- 청소년 영화감독은 이우고등학교 2학년 양희재, 청소년 문화제는 오수빈, 이시온, 이유주 3명이 기획단으로, 이우중학교 3학년 명시환, 이우고등학교 2학년 김진호, 이효재, 김보민, 이시온, 오수빈, 3학년 박지성, 강유나가 공연 참가자로 참여함. 문학 공모전은 공모를 받아 심사위원 2인과 함께 논의하여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집 제작 및 현재도 판매하고 있음.

6) 청년 일경험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사다리'와 삼성희망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일경험 운영을 실시함. 이우락쿱에서는 최여진 인턴과 함께 8주 가량의 인턴십을 진행함.
- 일 5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화-금 출근하여 진행하였음.

7) 청소년 활동 결과공유회

- 앞선 틈 장학 인턴십, 청소년 문화제, 우주소년 여름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다시 만날 우주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활동 결과 공유회를 진행함.
- 청소년 활동의 필요 이유와 참가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2. 민주시민교육사업

가. 정의

조합원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교육

나. 사업 계획 대비 실천 내용

순	프로그램명	결과
1	달콤소득 (이우중고등학교 학생 기본소득 '달콤권')	완료
2	마르지 않는 샘 (우주포인트)	완료 (사업 수정 진행)
3	우주소년 문화행사	완료
4	리유저블컵 사용	별도 진행 사항 없음
5	제로웨이스트 상품 판매	완료
추가	이우락쿱 학생 조합원 대상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완료

추가	대화의 식탁 with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완료
추가	활동가 교육	완료
추가	도서 관련 행사 및 네트워킹 참여	완료

다. 프로그램별 주요 결과 보고

1) 달콤소득 -> 달콤권

- 이우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달콤할 권리, 이우락쿱 학생기본소득 '달콤권'을 진행함.
- 420장 이내 배포 중 342장 달콤권이 회수됨. 설문조사는 342장 중 96명의 응답이 완료됨.

1. 당신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응답 9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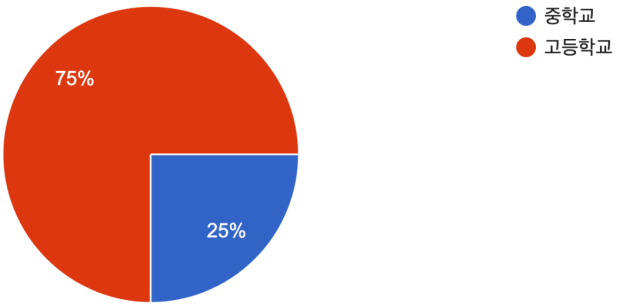

2. 달콤권을 사용하셨나요?

응답 9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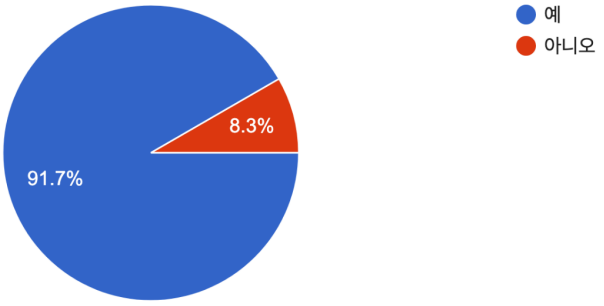

3-1. (2번 질문에서 '예'를 고른 사람만) 달콤권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응답 8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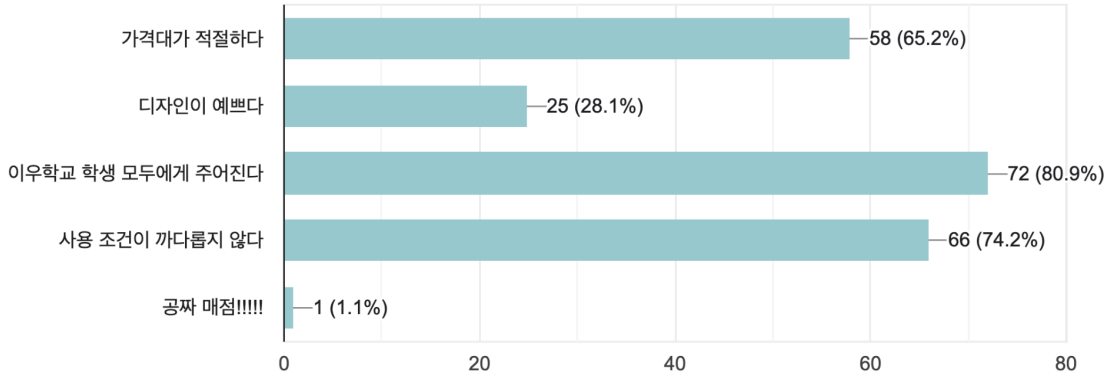

3-2. (2번 질문에서 '아니오'를 고른 사람만) 달콤권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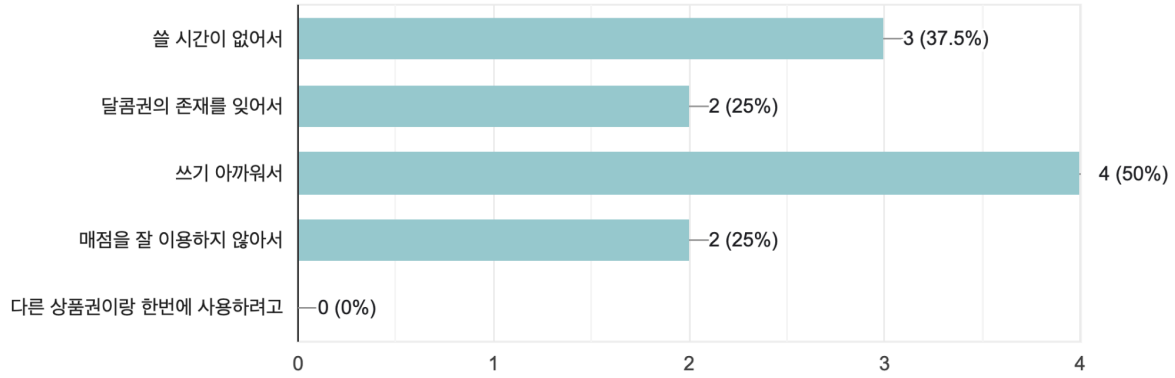

4. 달콤권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복수 응답 가능)

응답 9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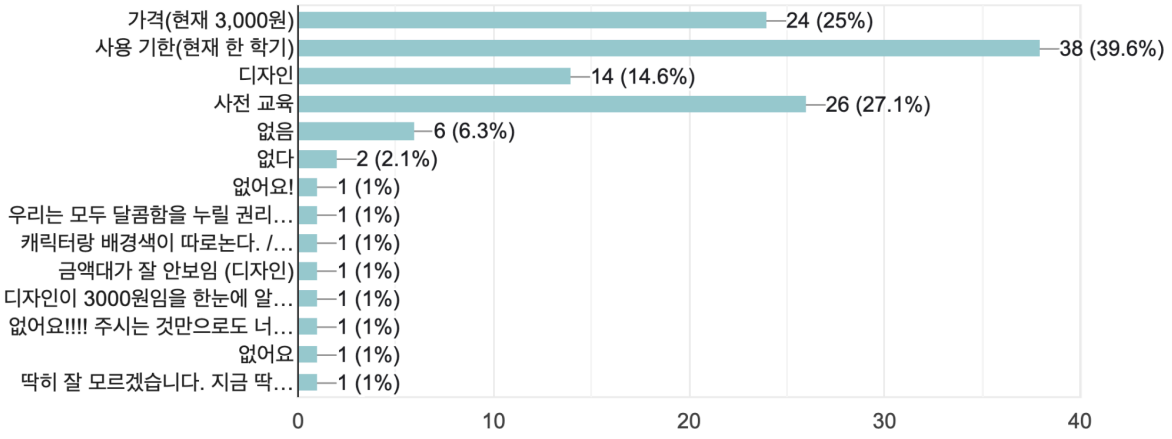

2) 마르지 않는 샘 -> 우주포인트

- 우주소년에서 배움을 만들어나가는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
- 도서나 음료 구입 시 적립, 선결제 등을 통해서 우주포인트로 적립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이 포인트를 음료나 도서 구입 시 사용 가능.
- 이우학교 학생을 한정으로 하지 않고, 지역 인근 청소년들까지 확대해서 진행 중.

3) 이우락쿱 학생 조합원 대상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 2026년 1월까지 조합원 가입을 한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함. 1회차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 하는 시간, 2회차는 함께 랜덤 비빔밥 만들어 먹기, 그라운드룰 만들기, 외부탐방 준비하기 등을 진행, 3회차는 인권재단 사람과 1유로프로젝트(지역재생관련) 방문, 4회차는 외부탐방 회고로 운영하였음.

2. 이우락쿱 겨울 프로그램 운영비 **(**총 **4**회차**)**

회차	비목	내역	출금
1회차	간식비	당근머핀케이크 9개	40,500
	간식비	마들렌 2개	5,600
	간식비	음료 (돈시몬 2L 1개, 아이스티 2인 분량)	12,000
2회차	식비	참기름	9,000
	간식비	한살림 간식	28,900
3회차	사례비	인권재단 사람	100,000
	사례비	방문공간 선물(드립백) 2개 기관	30,000
	식비	(점심) 1유로프로젝트	133,200

4) 대화의 식탁 with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를 한국에 도입한 자유스콜레와 함께 대화의 식탁 with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함.
-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대화의 질문을 만들고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짐.
- 자유스콜레 링크 참조

5) 활동가 교육

- 우주소년에서 디저트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 냠냠에게 에그타르트와 휘낭시에를 만드는 방법을 배움.

6) 지역 서점 연합

- 동네책방네트워크 총회 참석, 용인 책방 네트워크 참석

3. 학생건강증진사업

가. 정의

학생 및 조합원 등, 사업장 이용객에게 친환경 및 유기농 간식 판매

나. 사업 계획 대비 실천 내용

순	프로그램명	결과
1	친환경, 사회적 기업 등의 업체를 통한 간식 구매	완료
2	지역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이용한 간식	완료

다. 프로그램별 주요 결과 보고

1) 달콤샘 운영 관련

- 학부모회 소속 달콤샘 위원회와 협력 운영
-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당일 봉사자 급식비 지원
-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건강한 간식 시식 행사등을 통해 달콤샘에 대한 인식 확산
- 학생들 대상 ‘달콤권’으로 이용할 권리와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

4.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사업

가. 정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마을 전체가 모두의 배움터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나. 사업 계획 대비 실천 내용

순	프로그램명	결과
1	동천공유샘 지원	-
2	일상프로그램 확대	완료
3	지원사업 공모 및 참여	완료
4	자원활동가 확대	완료
5	마을탐방 지원	완료
추가	이태원톤 (빠띠, 하자캣츠 등 협력)	완료
추가	사이에 부는 바람과의 우리들 놀이터 등의 협력	완료
추가	팝업 식당 운영	완료

다. 프로그램별 주요 결과 보고

1) 일상프로그램 확대

- 22개의 문화프로그램 진행

2) 지원사업 공모 및 참여

- 7개의 지원사업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
  (DMZ다큐멘터리, 경기콘진 영화관, 기록상자팀(경기문화재단) 협업,
  아르케컬처(용인문화재단)협업, 함께 만들 우주 (문화머뭄),
  가족각본&모든가족은퀴어하다(머내마을영화제), 용인북페스티벌(용인시도서관사업소),
  여성학자의 공부법(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 자원활동가 확대

- 2026년 2월 28일 기준, 우주소년 일상 자원활동가 9명, 객원활동가 4명, 이우락쿱 운영진 2명(한덕희, 정현진) 총 15명이 우주소년을 가꾸는 일에 함께하고 있음.
- 오전 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활동가가 함께 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음.

4) 마을탐방 지원

- 이우락쿱에서 2026년 이우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마을탐방 운영 총괄을 함.
- 마을기관 조율, 활동비 정산,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음.

- 올해는 재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여하였음.

  (활동 후 설문조사 보기 2026년 이우고 신입생 마을탐방 도우미 활동 후 설문조사(응답))

5) 이태원톤 협업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하자캣츠(한선정)과 함께 '보라별을 띄울래' 프로젝트를 진행함.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이름은 <이태원 기억담기>임.
- 동네책방네트워크, 이우고등학교 세월호 준비위원회, 지역주민 등과 함께 다양한 장소, 시간에서 이태원 메모를 전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이후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6) 우리들 놀이터

- 사이에 부는 바람, 라이브러리 피치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함.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이름은 <라피치닷 독서클럽>임.
- 발달장애 아동 3명, 교사, 우주소년 매니저와 함께 지역 공간에서 독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함. 라이브러리 피치는 책, 노트 등을 제공하고, 우주소년은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함.
- 향후 이우중학교 학생들과 겨울방학에 쿠키를 굽는 프로젝트도 진행함.

7) 팝업 식당 운영

- 이번 2월에는 전 워커힐 쉐프가 숙성 도우로 만든 피자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함.

5. 재생에너지발전사업

가. 정의

무공해 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사회,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

나. 사업 계획 대비 실천 내용

순	프로그램명	결과
1	신학습관 테라스 조성 사업 (달콤파워)	완료
추가	조합원의 날 행사	완료
추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완료
추가	기후프레스크 워크숍 지원 및 참여	완료

다. 프로그램별 주요 결과 보고

1) 신학습관 테라스 조성 사업

- 이우중학교 1학년 자립과 자작 수업 중 하나인 <생활전기> 팀에서 달콤파워를 만들었음.
- 이우중고등학교 목공 동아리에서는 테라스에 필요한 의자, 테이블 등을 직접 학생들이 만들었음.
- 이우학교와 이우락쿱에서는 천막을 달아 학생들이 편의를 증진시킴.
- 10월에는 학부모 달콤샘 위원회와 함께 간식데이를 운영하였으며 이우락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야간매점 운영 관련 설문, 간식 먹기(소떡소떡, 미숫가루, 청귤청) 등을 진행함.

2) 조합원의 날 행사

- 2025년 12월 이우락쿱 조합원 대상으로 제1회 조합원의 날 행사를 진행함.
- 이우락쿱 알아보기 퀴즈,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의 특강 등을 진행함.

3) 기후프레스크 워크숍 지원 및 참여

- 기후 변화의 과학적 원리와 그로 인한 영향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협력적이고 참여형 워크숍인 기후프레스크 지원
- 학부모, 학생들이 워크숍으로 학교와 지역내에서 실천적 활동을 모색할 기회로 제공

▶ 당기 결산보고서 확인하기

PDF 안건4_본점_결산부속명세서.pdf

PDF 안건4_본점_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pdf

PDF 안건4_지점(우주소년)_결산부속명세서 2026.02.pdf

PDF 안건4_지점(우주소년)_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pdf

PDF 안건4_통합_결산부속명세서.pdf

PDF 안건4_통합_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pdf

[5안] 2025년 감사 보고의 건

[5안] 2025년 감사 보고의 건

사업 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보고 및 안건 제안자 | 감사 이태희

작성자 | 감사 이태희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필요

정관 제53조 제1항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당기 감사보고서 확인하기

PDF 안건5_감사보고서.pdf

[6안] 2026년 임원 선출의 건

[6안] 2026년 임원 선출의 건

임기 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8년 4월 30일

보고 및 안건 제안자 | 선관위원장 장기혁

작성자 | 선관위원장 장기혁

---

1. 선관위의 구성

정관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 규약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3이 전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회의 및 총회 중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순	이름	조합 가입 연도	조합 내 직위
1	공오숙	2024년	운영위원
2	백현심	2023년	조합원
3	송은영	2024년	운영위원
4	윤을순	2020년	이사
5	장기혁	2020년	운영위원

2. 임원 후보자

제9조(임원후보자의 자격) ① 임원후보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 중에서 아래의 내용 중 1가지 이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2. 조합의 각종 자치 행사와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② 임원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약에 따른 총회 참석 대상자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이외의 자는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조합원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이 완료된 조합원이며 추천일 당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임원후보자를 추천한 조합원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 규약 제6조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탈퇴를 하여 재적 조합원이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본 조항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전형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7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사 후보			
기호	이름	조합 가입 연도	비고사항
1	김나리	2020년	연임
2	김미선	2024년	신임
3	신광호	2024년	연임
4	이은영	2024년	신임
5	이창하	2026년	신임
6	정현진	2020년	연임
감사 후보			
기호	이름	조합 가입 연도	후보 직위
1	이태희	2020년	연임

3. 임원 선출

제19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법으로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방법을 총회에서 정한다.
②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③ 표결 시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미리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은 이사로 당선된 자들이 그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장 후보가 다수일 때에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은 제19조와 제22조를 따른다.

제21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제22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가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한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제1차 선거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7안]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건

[7안]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건

사업 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보고 및 안건 제안자 | 간사 정현진

작성자 | 간사 정현진

▶ 첨부파일 참고

PDF **안건7_사업계획 및 예산서.pdf**